

	강사임용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9. 8. 1.
		최종개정일자	2021. 1. 11.
		담당부서	교무입학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3조(교원의 임용) ⑨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규임용

제2조(임용전형) ① 임용은 공개임용과 특별임용으로 구분하며, 공개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임용을 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 출산휴가 · 휴직 · 파견 · 징계 · 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 · 퇴직 · 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2.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를 임용할 경우
3. 학기 개시일 이전 30일 이내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여 긴급히 임용이 필요할 경우

제3조(임용자격) 강사의 임용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강사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 한다.

제4조(임용기간)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 출산휴가 · 휴직 · 파견 · 징계 · 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 · 퇴직 · 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임용시기) ①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의2(퇴직금) 재직기간이 연속 1년인 강사 중 해당 학기 주당 5시간 이상 강의한 강사에 대하여 연 4주의 범위 안에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1.01>

제6조(임용계약) ① 신규임용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며, 임용과 관련하여 甲에게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허위서류가 있을 경우, 당해 강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담당하기로 한 과목의 폐강 또는 당해 과목이 속한 학과의 폐과 등 교육과정정상 불가피하게 강의를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2. 급여
3.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담당 과목 또는 강의시간

6. 재임용 절차

7.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

제7조(임용분야 및 임용인원) 임용분야 및 임용인원은 대학 교육과정, 예산, 해당 학과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8조(채용공고) 강사의 신규임용 공고는 임용분야, 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5일 이상 공고 한다.

제9조(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① 강사의 지원자격은 이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②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임용지원서
2. 최종학위증명서
3. 교육 및 연구업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신규 강사 임용은 해당 부서 및 학과의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

제11조(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際斥된)다.

1.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가족 또는 친족이거나 가족·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학연, 지연 등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심사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 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피는 심사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제4상에 따른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위원의 위촉 해지) 임용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심사구분) ① 강사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대학교원 자격기준의 적합여부
2. 전공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실적 및 잠재력 역량, 산업체 경력

3. 면접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심사

② 제1항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2, 별표3와 같다.

제14조(심사절차)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항목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별표3 「전공심사 평가표」에 따라 전공심사를 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상위 3배수 내외를 선정한다.

③ 강사 자격기준 적합자에 대하여 면접심사위원회는 별표4 「면접심사 평가표」에 따라 면접심사위원 별로 심사를 하며, 자원자의 면접평가점수는 각 지원자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④ 지원자의 최종점수는 전공심사 평가점수와 면접심사 평가점수의 합으로 한다.

④ 최종합격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15조(임용유보)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사과정에서 기밀준수여부 또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2. 학과 및 대학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본교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

제16조(임용 취소)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신규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예비순위자임용) 신규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매학기 시작일 전까지 또는 학기 중에 임용을 포기 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예비(또는 후)순위자순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강사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 및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각각 5년 및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9조(당연퇴직) ①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는 임용기간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 퇴직한다.

제3장 재임용

제20조(재임용)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강사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입학처에 별표5호의 「재임용신청서」 및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 기대 또는 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재임용 평가 시기는 재계약 예정 직전학기 중에 실시하며, 재임용평가는 별표6호의 '강사 재임용평가 기준'에 따른다.

④ 강의평가 결과가 평가시행 직전 3개 학기 중 2개 학기 이상 전체 교원의 하위 1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 한다. 다만 임용 학기가 3개 학기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별표6호의 '재임용 기준점수'를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⑥ 재계약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된 강사는 당연 퇴직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는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강사 재임용 거부사유서」 1개월 전까지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재임용 탈락 시 소명) ①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 신청된 강사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재심의 한다.

제22조(재임용 거부)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호의 경우 총장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지된 경우
2. 소속 학과가 폐과한 경우
3.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규 전임교원을 임용한 경우
4.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 기타, 임용계약서의 재임용 불가에 해당하는 경우

제4장 직무 및 근로조건

제24조(의무) ① 강사는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법령과 본 대학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교육과 연계된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수업과 관련된 문서(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평가 관련 결과보고서 등) 작성
2.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교과목 명세서 등에 따른 평가계획 준수와 성적 제출
3. 담당교과목에 대한 학습 상담 및 지도
4. 대학 지정 및 법정 의무교육 이수 : 대학 학사직무교육, 성폭력예방 관련 교육, 장애학생 인식 관련 교육 등

제25조(소속) 강사가 본 대학 내의 여러 학과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에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교수시간) 강사는 주당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주당 9시간까지 할 수 있다.

제27조(처우) ① 임금은 본 대학 강의료지급규정 및 임금 계약으로 정한다.

②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③ 강사는 본인의 사정으로 의원면직을 원하는 경우 1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장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휴직) ①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28조(휴직교원에 대한 처우) 휴직중인 강사는 본 대학 강사로소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9조(휴직기간의 만료 등)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강사는 자동 면직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0조(면직사유)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 있다.

1.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교무입학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가. 대학에서 정한 기한 내 수업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나.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휴·보강 등)

다. 성적평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

2.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3.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4.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용계약으로 정하여 면직할 수 있다.

1. 정관,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학과가 폐지되거나 과원이 되었을 경우

5.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지된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5장 징계

제31조(징계의 사유) 본 대학이 유지·경영하는 강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기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성희롱·성폭력, 기타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32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3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34조(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입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강사징계위원회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5조(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으로 한다.

②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은 강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제척사유) 강사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7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강사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강사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38조(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강사의 임면권자가 강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강사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0조(징계의결)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임면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강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④ 강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1조(징계의결의 기한) 강사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비밀누설의 금지) 강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보칙) ① 강사의 인사기록물 및 문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인사규정 등을 준용하며,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 경과조치) 이규정 시행과 동시에 2014년 2월 1일 최종 개정되어 시행해온 “강사위촉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임용 중인 시간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사로 이미 임용된 자는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접수번호

강사 임용지원서

지원학과				교과목명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E-mail			
학력 (전문학사 부터)	학위명	재학기간		대학명	학과(부)명	전공	학위취득일
교육경력	재직기간		소속기관명	직위	기타	경력사항(과목명)	
산업체 및 기타경력	재직기간		소속기관명	직위		경력사항(업무)	
자격사항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별지서식2]

자 기 소 개 서

초빙학과	생년월일	성 명
		[인]

- ※ 자기소개서는 1 페이지 분량으로 기재 요망
- ※ 글자체 : 휴먼명조 / 글자크기 : 11 / 줄간격 : 160%

[별지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병역관계, 가족사항, 학력사항, 강의경력, 근무경력, 자격증, 상벌사항, 자기소개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입사지원 및 채용 관련 정보 제공, 채용 후 범죄경력 조회, 지원자 사후 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입사지원 관련서류 제출 후 준영구까지입니다. 또한 보유기간 종료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합격하지 않은 지원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파기함.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채용관리(내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자료제공 등), 4대보험 신고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동일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민감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신상정보, 장애정보, 수급자 정보, 종교, 자기소개서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채용관리(내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자료제공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동일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교육부(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임용대상자 관할 구청, 전북지방경찰청
제공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임용대상자의 등록기준지
제공목적	목적 : 교직원 임면신고, 4대보험자격취득(상실), 성범죄조회, 세법상 신고, 신원조회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동일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

[별지서식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목포과학대학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목포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강사 신규임용 심사 평가표[기초■전공■면접]

학부(과)		초빙분야		성명																				
심사 항목		배점	세부 심사 항목			심사점수																		
기초 심사	자격심사	X	(단위: 년)			☐ 적합 ☐ 부적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연구·교육 경력연수</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직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구실적연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교육경력연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구실적연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교육경력연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강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body> </table>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연구·교육 경력연수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직명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강사	1	1	2	1	2	3
연구·교육 경력연수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직명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강사	1	1	2	1	2	3																		
전공 심사	최종 학력	20	- 박사졸업의 경우 (20점) - 박사수료의 경우 (18점) - 석사졸업의 경우 (15점) - 학사졸업의 경우 (12점) - 전문학사의 경우 (10점)																					
	교육경력	20	- 교육경력 3년 이상 (20점) - 교육경력 2년 이상 3년 미만(18점) - 교육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15점) - 교육경력 1년 미만인 경우(10점)																					
	산업체경력	20	- 산업체경력 4년 이상 (20점) - 산업체경력 2년 이상 4년 미만 (15점) - 산업체경력 2년 미만 (10점)																					
	전공 적합성	10	- 지원분야 전공과 학력·교육·산업체경력이 매우적합 (10점) - 지원분야 전공과 학력·교육·산업체경력이 적합 (8점) - 지원분야 전공과 학력·교육·산업체경력이 매우유사 (6점) - 지원분야의 전공과 학력·교육·산업체경력이 유사 (4점)																					
면접 심사	면접	30	- 인성 및 태도 (10점) - 교육관 및 사명감 (10점) - 직무관련도 (10점) ※실무능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과발전 기여 역량평가																					
합계		100																						

강사 신규임용 기초심사 평가표

학부(과)	초빙분야	성명

심 사 항 목	세부 심사 항목	심 사 결 과
기초심사	- 자격심사	☐ 적 합 ☐ 부적합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단위: 년)

연구·교육 직명	학력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강사		1	1	2	1	2	3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강사 신규임용 기초심사 평가표(특별채용)

학부(과)	초빙분야	성명

심 사 항 목	세부 심사 항목	심 사 결 과
기초심사	- 자격심사	☐ 적 합 ☐ 부적합

* 특별채용 조건

- 산업체를 원소속기관으로 하여 정규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
-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고등교육법 제14조의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단위: 년)

연구·교육 직명	학력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강사		1	1	2	1	2	3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강사 신규임용 전공심사 평가표

학부(과)	초빙분야	성명

심사 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심사점수
전공심사	① 최종 학력	20	- 박사졸업의 경우 (20점) - 박사수료의 경우 (18점) - 석사졸업의 경우 (15점) - 전문학사의 경우 (12점)	
	② 교육경력	20	- 교육경력 3년 이상 (20점) - 교육경력 2년 이상 3년 미만(18점) - 교육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15점) - 교육경력 1년 미만인 경우(10점)	
	③ 산업체경력	20	- 산업체경력 4년 이상 (20점) - 산업체경력 2년 이상 4년 미만 (15점) - 산업체경력 2년 미만 (10점)	
	④ 전공 적합성	10	- 지원분야 전공과 학력 · 교육·산업체경력이 매우적합 (10점) - 지원분야 전공과 학력 · 교육·산업체경력이 적합 (8점) - 지원분야 전공과 학력 · 교육·산업체경력이 매우유사 (6점) - 지원분야의 전공과 학력 · 교육·산업체경력이 유사 (4점)	
합 계		7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강사 신규임용 면접심사 평가표

학부(과)	초빙분야	성명

심사 항목	평점				
	A (10점)	B (8점)	C (5점)	부적합	계
1. 인성 및 태도					
2. 교육관 및 사명감					
3. 직무 관련도					
합계					

■ 심사위원별로 개별 평가하여 작성함.

■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항목이 2개 이상이면 임용 제외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	--	----	--	----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별지서식9]

강사 신규임용 심사순위 대장

□ 학과 :

순위	성명	생년월일	최종 학위	점수 현황				비고
				기초심사 (적 / 부)	전공심사 (70점)	면접심사 (30점)	합계	
1								
2								
3								
4								
5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강사 재임용 신청서

신청학과명		접수번호	
-------	--	------	--

1. 소속학과 :
2. 직 급 :
3. 성 명 :
4. 생년월일 :

본인은 20 년 월 일자로 현 강사 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임용을 신청합니다.

○ 향후 강의개선계획 <작성>

○ 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활동실적<작성>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인)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

학부(과)	성명	평가기간
		20 . . . ~ 20 . . .

평가 항목	항목배점	배점한도	취득 점수
① 강의계획서 기간 내 입력 ※ 기간 내 미입력 시 강좌당 3점 감점	10	10점	
② 수업시간 준수 ※ 수업 미준수 시 1건당 3점 감점	20	10점	
③ 성적평가의 적정성 준수 ※ 기간 내 미입력 시 강좌당 3점 감점 ※ 성적이의 신청 건수 1건당 3점 감점	10	10점	
④ 강의평가 - 강의평가 평점 4.5 이상 - 강의평가 평점 4.0 이상~4.5 미만 - 강의평가 평점 3.5 이상~4.0 미만 - 강의평가 평점 3.5 미만 ※ 5점 만점	40 35 30 25	40점	
⑤ CQI(수업개선) 보고서 작성 ※ 기간 내 미 작성 시 강좌당 5점 감점	20	20점	
평가 미달자 학과 발전기여도 (가점)	5/8/10	10점 (가점)	
합 계		100점	

- 1) 평가점수는 80점 이상이어야 재임용을 허가함.
- 2) 강의평가점수 : 5점 만점 기준이며, 해당 교원의 학기별 강의평가점수 평균으로 평가함.
- 3) 강사 재임용 평가표는 전임교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고 참석교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학과장이 작성하여야 함.
- 4) 재임용 기준 미달한 자에 대해 건학이념 및 대학발전 학과 발전의 기여도 및 학생지도에 헌신할 경우에 한 해 재임용 평가 위원과 합의해 최대 10점까지 가점 부여할수 있음

평가점수 80점 미달자에 대한 의견(가점 최대 10점)
(건학이념 구현, 대학발전 또는 학부(과) 발전의 기여도 및 학생지도 분야 공적 서술) (우수 10점, 양호 8점, 보통 5점)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 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 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 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강사 재임용 종합평가표

○○○○○○학과

연번	이름	강의계획서 기간 내 입력	수업 시간 준수	성적 평가의 적정성 준수	강의평가	CQI	가점	합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재임용 가/부)
		10	20	10	10	20	10	100	

※ 비고

강사 재임용은 평가점수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강의평가 결과 전체 교원의 하위 1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년 월 일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강사 임용 소속기관장 동의서

■ 성 명 :

■ 생년월일 :

소 속
산업체명

직 장 주 소

전 화 번 호

직 위

담 당 업 무

재직기간
※(정규직/비정규직)기재

사업자등록번호

용도 및
제출처

학교 제출용

위 사람을 목포과학대학교 강사로 임용 신청(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직인)

서 약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본인은 목포과학대학교 교원 신규채용의 전형 심사 절차 진행과정 및
임용(위촉)이 결정된 이후에라도 학위, 연구실적물, 경력사항 등 제출한 서류
의 위조나 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위촉) 취소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하며 교수 초빙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명 : (인)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